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8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1.
3. 회부안월일 : 2025.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을 증·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추가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¹⁾,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³⁾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u> (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u> ----- ----- ----- ----- ----- ----- ----- -----

현행	개정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 ----- ----- ----- -----. 1. <u>특정소방대상물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u> 2. <u>특정소방대상물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가. <u>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u> 나. <u>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u> 다. <u>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u> 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도서관</u> 4.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문학관</u>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u>박물관 및 미술관</u>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⁴⁾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2)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시설 등을 관리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제24조제1항 및 제5항).

또한,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⁵⁾을 갖춘 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⁶⁾로 선임하여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를 감독하고,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제29조⁷⁾).

-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5)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는 [참고 1] 참조
 - 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는 [참고 2] 참조
 -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체적인
요건과 대상은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⁸⁾, 이는 소방기술 및

-
-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건설기술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소방기술·건설기술의 발전과 소방환경·건설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구체적으로 이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는 규모(연면적, 층수, 높이),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인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제29조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연면적), 위치적 특성(지하층 지상층 여부), 용도(냉동·냉장 창고)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문 내용을 비교하면, ① 현행법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현행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근거: 법 제24조제1항·제5항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시행령 제25조 및 [별표4]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근거: 법 제29조제1항	-근거: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의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의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요건: 시행령 제29조	-요건:법 제29조제1항 각 호 * 현행법의 요건 + <u>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관, 미술관(추가)</u>

현재 전국에는 22,694개의 도서관, 295개의 미술관, 916개 박물관 46개 문학관이 있는데, 이 중 현행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는 곳은 박물관은 전체 박물관의 71.0%, 미술관은 전체 미술관의 67.1%, 문학관은 전체 문학관의 32.6%,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4.0%로 나타남.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현황>

구 분	현행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유		무		계	
	개소	%	개소	%	개소	%
도서관	897	4.0	21,797	96.0	22,694	100.0
미술관	198	67.1	97	32.9	295	100.0
박물관	650	71.0	266	29.0	916	100.0
문학관	15 ⁹⁾	32.6	31	67.4	46	100.0
계	1,760	7.3	22,191	92.7	23,951	100.0

(출처: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의 보존물이나 전시물은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화재로 소실되는 때에는 복구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2012년 국립 현대 미술관 건립공사 화재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 사고가

9) 현행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 4)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연면적 1천㎡ 이상인 문학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함.

발생하였는 바,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개정안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관련한 현행 법령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두고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상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이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때에 해당 기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제도로 그 목적, 선임주체,

선임자격, 업무 등이 상이하지만, 두 제도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면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 ‘한시적’인 기간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두는 건설현장 소방관리대상물의 요건은 법률에서 규정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한시적인 제도는 주요 사항이 모두 법률에 규정되고 보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주요 사항은 법률과 시행령에 나누어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령의 형식적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 방식이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비교>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선임 주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공사시공사
선임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선임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4]의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인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3.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 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	등급에 관계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 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자료: 소방청)

둘째, 개정안의 취지는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의 공사 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현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그 요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령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요건을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 중 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③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현행법 제2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으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범위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류·범위는 일치하지 아니함¹⁰⁾.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과 개정안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10)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등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조제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화재예방법 제24조)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1관당 평균 면적인 117.1㎡인 작은도서관(6,830개소)은 전체 도서관(22,694개소)의 약 30.1%를 차지하는 등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중에는 소규모 시설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¹¹⁾, 모든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을 개축등을 하는 때에 항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미술관·박물관 등의 건설현장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향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등 개정의 유연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11)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은 1관당 평균 면적이 117.1㎡이고 1관당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9.9명임.

<전국 도서관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개소)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정시설 도서관
20,977	4	1,296	6,830	456	11,842	495	54
22,694	병영도서관 1,686개관, 장애인도서관 31개관						

- 작은도서관 현황

구분	공립	사립 (5,245개관)				
	지자체	개인/단체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법인	아파트*
작은도서관 수	1,585	1,382	291	1,078	283	2,211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건설현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인건비 등 건설비용 증가로 국민의 부담 증가와 다른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은도서관이나 개인·단체·법인(비영리) 등이 설립·운영하여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립박물관·미술관까지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도서관 등의 운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고,

전체 문학관 중 37.0%를 차지하는 사립문학관¹²⁾의 경우 사립문학관의 소장자료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학유산의 보존을 취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¹³⁾이나 과태료¹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12) 문학관 총 46개소: 공립문학관: 29개소, 사립문학관: 17개소

13) 현행법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0조제3항제3호).

14) 현행법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제52조제2항제4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2조제1항제5호).

참고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영 제25조제3항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선임자격)** 건물 규모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 자격자 선임
- **(선임주체)** 관계인
- **(선임기한)**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관리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업무대행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선임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제출서류)**
 -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② (업무대행)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 ③ (겸직허용) 해당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포함)
- **(처벌기준)**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등급별 선임대상

구분	선임대상물
특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표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 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표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등급별 선임자격

구분	선임자격
특급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처벌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참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선임신고

- (선임주체)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적용시점)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선임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 ①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②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③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④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①자격증 취득 + ②강습교육 수료

①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취득

② (교육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한국소방안전원, 24시간)

※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 위반

* 소방공사법 제27조제3항 위반(벌금 3백만원 ↓), 소방시설법 제25조제8항 위반(징역 1년 ↓, 벌금 1천만원 ↓)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소방서 민원담당자)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 (제출서류) 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강습교육 수료증, ③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 (주요업무)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 건설현장 소방계획서(표준시식)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게시됨

□ 처벌기준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